

추 가 약 정 서

(B2B구매카드대출-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의 B2B구매카드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년 월 일 자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연지급결제특약”, “한국씨티은행B2B전자결제서비스이용약관” (이하 “서비스이용약관”이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

제 1 조 (대출금 용도)

여신한도거래약정서는 연지급결제특약의 B2B구매카드대출에 관한 대출약정서로서, 이에 따른 대출금은 연지급결제 특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제 2 조 (대출한도 등)

- 대출한도는 금 원정으로 합니다.
- 신용공여기간은 최장 일로 합니다.
- 본인과거래하는판매기업에게 적용되는 선지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기업의 선지급 신청에 대한 은행의 선지급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선지급 직전 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 + 기간별 가산금리」로 계산되는 선지급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기간별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기 간	가 산 금 리
당 일	%
일이상 ~ 일내	%

제 3 조 (대출 실행)

은행은 거래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연지급 결제특약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를 실행하기로 하며, 본인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4 조 (대출금 상환)

- 본인은 연지급 결제특약 제10조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가 B2B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연지급 결제특약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 연지급 결제특약 제10조에 따른 대출금 상환은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기에 본인의 별도의 의사표시나 청구서 없이 본인 명의의 지정계좌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에서 은행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주)한국씨티은행

CR-A-586 (2023.9.19) 심의필 2309-02-095

-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처리에 있어서 지정계좌에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대출금 전액이 예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방법에 의한 대출금 상환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본인은 B2B구매카드대출 약정기간의 만료 전에 거래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대출약정기간 만료이후에 도래하여도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구매자금 결제를 위한 이체)

은행은 대출이 실행된 후 판매기업의 거래대금 결제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제 6 조 (대출 거래정지)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대출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B2B구매카드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2. 본인이 은행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일부라도 지체하는 경우
3. 본인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본인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5. B2B구매카드대출이 신용보증기금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본인에게 은행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전의 채무변제의 무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은행이 본인의 판매기업 또는 MP(Market Place)와 약정을 해지한 경우

제 7 조 (면책)

은행은 MP로부터 전송받은 매매계약내역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되며, 분쟁은 본인과 판매기업 그리고 MP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정보제공 동의)

본인은 B2B전자결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이 다음의 정보를 판매기업 또는 MP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의 대출한도·대출잔액·연체내역
2. 본인 및 그 대표자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3. 본인 및 그 대표자의 금융결제원 부도정보

제 9 조 (적용순서)

이 약정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연지급결제특약, 서비스이용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연지급결제특약, 서비스이용약관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제 10 조 (기타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서비스이용약관, 연지급결제특약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또한, 이 약정서 제8조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함.

본 인 : (인)